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 2020. 03.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대학에 재직하는 교직원, 등록된 재학생 및 기타 이용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사람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등)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독소)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
2. 감염병 (의심)환자란 의료기관의 진료결과 감염병 확진을 받았거나 의사 환자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유행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감염병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4. 방역물품이란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발열 감시, 전파 차단 조치, 격리 및 평상시 손씻기 실천, 학교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의미한다.

제2장 감염병 관리위원회

제4조(감염병 관리위원회 설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교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맡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학생 담당 부서에서 맡는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본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감염병 관리규정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관리와 관련된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
3. 감염병 위기대응계획의 검토
4. 기타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장 감염병 관리조직

제10조(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 ① 감염병 관리위원장은 대학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 관리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② 감염병 관리조직은 감염병 총괄관리자, 실무지휘자, 예방관리팀, 학사관리팀,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한다.
- ③ 실무지휘자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보고 및 신고, 위기 상황 진단 및 정책을 판단하며, 후속 대책을 세운다.
- ④ 예방관리팀은 평상시의 예방 활동과 감염병 발생 시의 대응업무를 담당하며, 학생담당부서팀장, 각 스쿨(기숙사) 감염병 관리자, 보건 담당자, 대학보건실 직원으로 구성한다.
- ⑤ 학사관리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학사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교무담당부서팀장, 스쿨 교무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⑥ 행정지원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며, 교육지원담당부서 관리센터장 및 팀원, 총무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감염병 총괄관리자)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를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

- ②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총장으로 한다.
- ③ 감염병 총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 담당: 사고지휘관 역할
 2.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
 3. 감염병 관리조직의 구성 및 관리

제12조(감염병 실무지휘자)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를 총괄하는 실무지휘자를 지정한다.

- ② 감염병 실무지휘자는 감염병 총괄관리자가 임명한다.
- ③ 감염병 실무지휘자는 대학교 전체 또는 해당 캠퍼스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휘 감독하며, 감염병 발생 정보를 취합하여 감염병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제13조(감염병관리자) ① 대학 내 각 스쿨 별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및 관리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감염병 관리자는 감염병 총괄관리자가 지정한다.

③ 감염병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담당 기구 내 감염병 발생 감시
2. 감염병 발생 정보의 취합 및 보고
3. 구성원들에게 감염병 관련 정보의 제공
4. 감염병 (의심) 환자 관리
5.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
6.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4조(대학보건실) 대학보건실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

1. 감염병 발생 감시
2. 교직원용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
3. 감염병 관련 상담
4. 감염병(의심) 환자 관리
5.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4장 감염병 관리 및 조치사항

제15조(감염병 관리) ①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학교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수행한다.

제16조(방역) ①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②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또는 유행 시 임시 소독을 실시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